

○ 퇴직급여충당부채

○ 퇴직급여충당부채

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등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상당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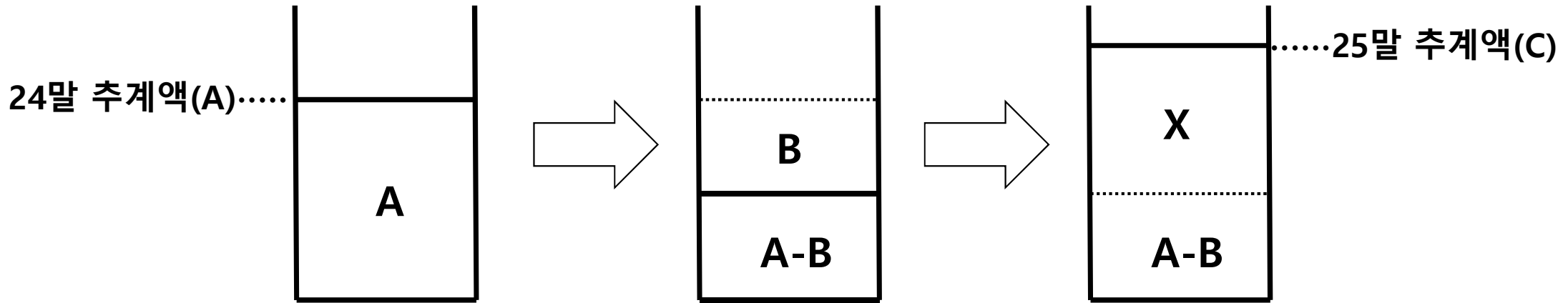
○ 퇴직급여충당부채 vs 퇴직급여

-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: 부채 → 저량개념
- ② 퇴직급여 : 비용 → 유량개념

[퇴직금지급] 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(대) 현금 XXX

[기말결산시] (차) 퇴직급여 XXX (대) 퇴직급여충당부채 XXX

○ 퇴직급여충당부채



□ 24말에 퇴직금추계액 조사결과 = A

24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퇴직금추계액인 A로 계상함

☞ 24말 퇴직급여충당부채 = A

□ 25중 퇴직금을 B만큼 지급함 (퇴직급여충당부채를 B만큼 덜어냄)

☞ 25년 결산전 퇴직급여충당부채 = (A - B)

□ 25말 퇴직금추계액을 조사해보니 C였고 이에 맞춰 퇴직급여를 설정함

: 퇴직급여 설정액을 X라하면 $(A-B) + X = C \therefore X = C - A + B$

☞ 25말 퇴직급여충당부채 = C , 25년 퇴직급여 X = C - A + B